

## 2021년도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1차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첫걸음기획) 미래 유망기술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강소 100 패키지)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규모(신규) : 33억원, 130개 과제

□ 지원유형 : 자유응모(품목지정)

□ 지원분야 : ①첫걸음기획, ②강소 100 패키지

#### □ 지원대상

- (첫걸음기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강소 100 패키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내역사업	세부과제		
R&D기획지원	첫걸음기획	4개월	25.5백만원 (최대 25.5백만원/4개월)
	강소 100 패키지	4개월	25.5백만원 (최대 25.5백만원/4개월)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1. 1. 29.(금) ~ 2021. 3. 2.(화)

\* 전산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3. 2.(화) 18:00까지

## 2. 추진근거 및 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 □ 추진체계



##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3억원, 130개 과제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R&D 기획지원	첫걸음기획	1차	55	'20.1
		2차	55	'20.4
	강소 100 패키지	1차	10	'20.1
		2차	10	'20.4

\* 첫걸음기획 및 강소 100 패키지 지원과제 수는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 지원분야 : 자유응모(품목지정)

- (첫걸음기획)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성장 기반 등 총 30대 분야, 197개 품목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2021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품목 리스트 : [별첨1] 참조

-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 (강소 100 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핵심 기술개발테마 품목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2021년 소재·부품·장비 지원대상 분야 및 제품 리스트 : [별첨2] 참조

-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전기전자, 환경

### ◇ 강소 100 패키지 안내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내 R&D기획지원사업과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R&D기획지원사업) 기술개발 전략, 경영 및 판매 전략 등 R&D기획을 지원
  -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사업) R&D애로해결 및 개발방향 전환 등 연구개발 중심 지원

\* 패키지 지원기업은 두 개 사업에 일괄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 사업만 수행 가능

- 신청기업은 사업별 공고 및 세부 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각 사업별로 개별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은 통합평가로 일괄 선정, 사업수행은 각 사업별 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

- '강소기업 100 패키지' 신청기업은 기획기관\* 자율선정이 가능하며, 기획기관 신청서 [붙임4]를 작성하여 제출

\* 기존 기획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기획기관 활용 시 기획기관 신청서 제출 불필요

## □ 지원방법 : 기획지원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여 R&D기획을 지원
-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D사업 연계지원을 위해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첫걸음기획 한정)

##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 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 기획을 지원

\* 주관기관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기획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R&D기획 지원내용 >

지원분야		세부내용
기술분야	기술분석	·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기술성 진단	· 기술혁신성 및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전략	·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기술로드맵	· 기술수준 분석 및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사업성 및 경제성분야	시장분석	·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 전망
	경제성 진단	·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화 전략	·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 강소100 패키지의 경우 선행특허기술분석 내 특허동향(국가, 출원인 등), 기술성장단계, 특허맵, 선행특허 회피방안 등을 포함

□ R&D사업 연계지원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첫걸음기획 과제는 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에 신청(해당 사업 신청자격 충족 필요)할 경우, 각 사업별로 2회에 한하여 우대(서면평가 면제, 사업 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

우대사항	대상 R&D사업
① 서면평가 면제	▪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
② 신청자격 부여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과제-기관추천과제)
③ 현장평가 가점(1점)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현장형)

\* 예시 : 2021년 10월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022년 12월말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 신청 시 사업별로 2회에 한해서 우대

□ 지원대상

-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첫걸음기획)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기존 과제 수행여부를 소급하여 적용.**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인력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BM기획(1단계)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강소 100 패키지)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li> <li>*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관할 세무서 신고)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li> </ul>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㉔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㉕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㉖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li> <li>*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관할세무서 신고)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li> </ul>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4.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75%이상 → 9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 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90%이내에서 최대 4개월, 2,550백만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공고시 사업비율에 맞춰 작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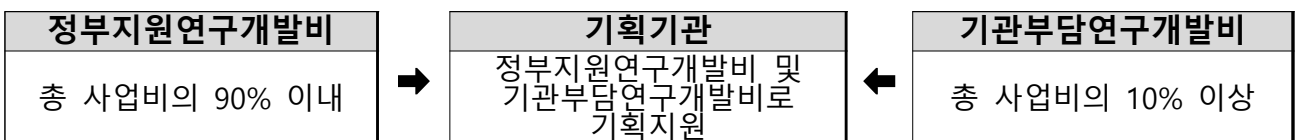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5,500	290	2,610	2,900	28,400
합계	25,500	290	2,610	2,900	28,400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9.79	-	-	10.21	100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290천원)은 전체 민간부담금(2,900천원)의 10.0%임

□ 사업비 지원 절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기획을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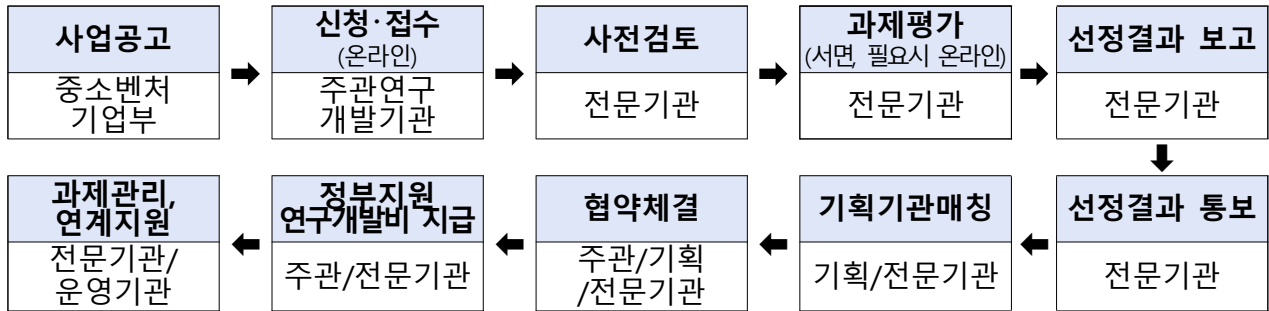




##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기관) 기보 등 10개 기관

###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R&D기획 제안서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과제로 추천
- (과제선정) 가·감점을 포함한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협약 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 □ 평가기준

- 서면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필요성 · 적정성	개발 기술의 기획 필요성 및 타당성	15
	목표 수준의 적정성	15
기술성 · 준비정도	기획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10
	기획 기술의 개발내용과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관련 기술 조사 및 동향분석, 경쟁현황 파악 정도	5
	기획 기술의 개발 역량	10
사업성	기획 기술의 시장규모 및 목표시장의 타당성 (시장 진입가능성 포함)	10
	기획 기술의 제품화 및 수출 가능성	10
	고용계획 및 효과 - 사업화 시 신규고용 및 유지계획	10
<b>합계</b>		<b>100</b>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가 · 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③	「아기·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⑧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2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 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기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업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⑪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⑫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⑬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 (KSM) :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⑭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⑮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⑯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⑰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 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 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2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⑲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 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⑳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90% 이상인 기업	2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 또는 10인 이상 증가한 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3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가점에 대한 인정은 과제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i)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된 과제, ii)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iii)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 6. 신청 및 접수 방법

###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1. 29(금) ~ 3. 2(화)
- 접수기간 : 2021. 2. 15(월) ~ 3. 2(화) 18:00시 까지

###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접수

- ☞ 신청방법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 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1년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1차 시행계획 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p>① 1단계 : 회원가입</p> <p>-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a href="http://www.smtech.go.kr">www.smtech.go.kr</a>)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p> <p>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p> <p>-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a href="http://www.smtech.go.kr">www.smtech.go.kr</a>)을 통해 직접 입력</p> <p>③ 2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p> <p>-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p>			

시스템(www.smt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21.4.30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본문1	○	
	** (본문1) 1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2	○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⑥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관할 세무서 신고)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⑦	기획기관 신청서			○
⑧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 7. 유의사항

- ①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총량제 적용 예외 사업)
- ②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 ③ 첫걸음기획 과제는 지정형 기획기관으로 운영하며, 강소 100 패키지는 수요에 따라 자율형 기획기관 또는 지정형 기획기관으로 운영
- ④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㉓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R&D기획제안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2-388-0114 (내선 2)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http://pf.kakao.com/_llfqd)

[붙임1]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21-2023) 품목리스트

[붙임2] 소재·부품·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붙임3] 2021년 R&D기획지원사업 기획기관 리스트

[붙임4] 2021년 R&D기획지원사업 기획기관 신청서

※ 품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를 참고바랍니다.

□ 4차 산업혁명분야 (20개 분야)

전략 분야	전략제품	전략 분야	전략제품
인공지능 (8개)	AI 기반 교육서비스 AutoML 솔루션 합성 데이터 (Synthetic Data) eXplainable AI(XAI)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 솔루션 Robotics Process Automation(RPA) System 영상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인간-인공지능 협업 시스템	지능형 로봇 (7개)	물류 배송 지능형로봇 협업형 산업현장 작업 지원 로봇 배달 및 안내 서비스 로봇 체험형 시뮬레이터 로봇 살균/방역 지능형로봇 커뮤니케이션 돌봄 로봇 수술용 의료 로봇
빅 데이터 (6개)	AI기반 데이터 가치 고도화 플랫폼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위한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인텔리전스 플랫폼 공공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스마트 제조 (16개)	중소기업용 스마트 제조 플랫폼 스마트 제조용 지능형 어플리케이션 생산 스케줄링 시스템(APS) HyperConnected(초연결) 스마트 제조용 보안시스템 스마트 설비 관리 시스템 중소기업용 On-Site 엣지 시스템 자율형 공정 제어 솔루션 디지털 트윈 생산시스템 스마트 제조용 웨어러블 기기 IoT 융합 공장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산업용 지능형 센서 무인반송차(AGV) 머신비전 검사 시스템 보급형 스마트팜 솔루션 스마트 축산 솔루션
5G+ (5개)	비대면 응용 서비스를 위한 5G 기반 통신 시스템 B2B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시스템 차세대 비대면 주파수 대역 활용 시스템 5G 무선통신 테스트 및 계측 장비 5G 기반의 스포셜 및 커버리지 확장 시스템		자율 주행차 (6개)
블록 체인 (6개)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및 인증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소유자 이력 관리 시스템 암호 자산 기반 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암호키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불법 거래 탐지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공유 경제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	시스템 반도체 (8개)	지율주행차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반도체 헬스케어 기기용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용 반도체 의료기기용 시스템반도체 오디오 시스템 반도체 무선 충전 IC 및 모듈 전력(파워)반도체(Power IC) 보안 솔루션(Security Solutions) 스마트카드 IC
서비스 플랫폼 (8개)	비대면 교육 플랫폼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 O2O 서비스 플랫폼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 오디오 미디어 플랫폼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	재난/ 안전 (7개)	공장용 환경안전 솔루션 IoT 기반 안전 앱/서비스 스마트 건설현장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자연재난 감시/예측/대응 시스템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가정용 통합 재난관리 시스템 적외선 열화상 비파괴 검사장치
실감형 콘텐츠 (6개)	실시간 인터랙션 콘텐츠 영상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저작도구 모션처리 미들웨어 입출력 처리 미들웨어 데이터 스트리밍 미들웨어		드론 (4개)



전략 분야	전략제품
스마트 시티 (7개)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정보 시스템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개발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시스템 에너지 스마트 거래 관리 시스템 지능형 디바이스 기반 에너지 최적화 관리 시스템 스마트 미터(AMI)
IOT (6개)	IoT용 스마트센서 홈 IoT 헬스케어 가전 스마트 홈 방범시스템 홈 IoT 지능형 컨트롤 시스템 홈 IoT 반려동물 케어장치 스마트 홈 위험상황 대응 시스템
바이오 (6개)	단백질 의약품 세포 및 조직 치료제 생체유래 물질 분석 시스템 분자/면역 진단키트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기능성 화장품
의료 기기 (6개)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고령친화 기기 및 시스템 뷰티케어 디바이스 치과용 진단 시스템 ICT 기반 지능형 영상진단 시스템

전략 분야	전략제품
전기. 수소차 (7개)	전력공급 및 저장시스템 인휠 모터 시스템 전장시스템 초소형 전기차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수소차 부품 국산화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8개)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고효율 수소생산 시스템 수소충전용 액화 및 부품 중소형 수소 저장 시스템 태양광 발전 모듈 및 장치 고효율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해상풍력 구조물 및 부품개발 지열 에너지화 활용 냉난방 시스템
이차 전지 (5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초고용량 슈퍼커패시터 이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
친환경 및 소재 순환 (6개)	바이오매스 연료화 폐기물 고형연료화 친환경 분해성 고분자 화학제품 재활용 공정 기술 희토류 원소 회수 및 소재화 친환성이 클, 생분해성 섬유

□ 중소기업 성장분야(10개 분야)

전략분야	전략제품	전략분야	전략제품
유기화학 (7개)	특수 기능성 화학소재 기능성 코팅/필름소재 기능성 점/접착 소재 고성능 탄소섬유 도료 및 염/안료 소재 의료용 화학소재 프탈레이트 가소제 대체소재	정밀기계 (5개)	(금형 보수용)하이브리드 가공시스템 의료용 3D 스캔 모듈 레이저 응용 복합가공/리페어 장비 스마트 정밀기계 유니트 레이저 기반 내부 결함 측정 장치
무기화학 (8개)	세라믹 패키지 에너지 저장/변환용 세라믹 고기능성 유리 프리세라믹 원료소재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3D 프린팅용 세라믹 분말	일반기계 (5개)	고효율 전기·전기-유압 액추에이터 자동차용 보조 공조 제품 고효율 고압 유압 밸브 제어 시스템 이종소재 접합 시스템 온실가스 저감장치
금속 (5개)	미세가공, 에칭 및 도금 고기능성 금속분말 고기능수소차용 전기가열 금속 담체 경량부품 제조용 압연/압출 환경친화형 용접/접합	조선 (8개)	선박 배기가스 저감장치 LNG 선박용 기자재 듀얼 추진 선박용 기자재 복합경량소재 적용 중·소형선박 레이저선박 기자재 및 레이저기기 오염물 제거 시스템 선박충돌 감지시스템 기관실용 기자재
전자전자부품 (4개)	광계측 및 센서시스템 광통신 부품 인쇄회로기판(PCB) 플렉서블 전자회로	식품 (6개)	가정간편식 제품(HMR 제품) 특수용도식품(케어푸드) 반려동물 식품/ 기능성 사료 식품위해인자 신속 검출 시스템(진단 키트) 건강기능성 식품 식품 가공 장비
반도체·레이저장비 (5개)	디스플레이용 잉크젯 프린팅 장비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장비 반도체 후공정/PCB 노광장비 반도체 이송장비 반도체 후공정 측정/검사 장비	섬유 (6개)	유해인자 차단 섬유 고강력, 고탄성률 섬유 기능성 코팅 섬유 ICT 융합 섬유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특수 기능성 의류 제조 시스템

## 소재부품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 품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를 참고바랍니다.

□ 9개 분야

전략분야	제품	전략분야	제품
기계 금속 (16개)	지능형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Fan&Blower 감속기 금속 3D 적층/절삭 장치 고내열 오일 탭 장치용 부품 동력 보일러용 서보모터 로봇용 연소 장비 베어링용 연소 장비 산업용 누설 방지 부품 산업용 부품 정밀 가공 부품 제강용 강재 초경량 및 고기능성을 가지는 금속 기반 이종접합 복합 소재	자동차 (12개)	차량용 지능형반도체 엔진 주변 부품 자동차용 복합소재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 시스템 전장 및 제어 열관리 시스템 수소 저장용 복합 소재 구동/제어 시스템 운전자 편의 시스템 조향 부품 차량용 동력 전달장치 현가장치 핵심부품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초 화학 (10개)	고효율 단열재 친환경 분해성 소재 3D 프린팅용 유무기 소재 UV경화 수지 고부가 에폭시 수지 고성능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소재 점접착제 슈퍼에지 니어링 플라스틱 슈유기 플루오린 레진	전기 전자 (16개)	통신용 전력증폭 소자 광통신 부품 광학부품 및 기기 스위칭 소자 유해가스 검지 소재 이차전지 분리막 이차전지 전극/ 전해액 첨가 소재 이차전지 용 파우치 자가발전용 유무기 소재 전자부품용 고성능 방열 소재 전자재료용 전구체 소재 MLCC 수동소자 RF부품 고유전율 RF용 유전체 소재
디스플레이 (12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로봇 박막봉지 소재/장비 OLED 발광소재 고유연 고경도 디스플레이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Repair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디스플레이용 검사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배리어 필름 디스플레이용 양자점 소재 디스플레이용 잉크젯 프린팅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증착 및 식각 장비 및 부품 이방성 전도 필름	바이오 (9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시스템 및 부품 바이오의약품 생산 품질 분석 시스템 바이오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 바이오의약품 생산 배양시스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제품분석용 소모품 바이오의약품 배양 공정 관리 시스템 및 부품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배지 방사선 진단 장비 의료용 레이저 장비
반도체 (12개)	반도체 리페어 장비 고성능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반도체 노광 공정/장치 반도체 CMP 장비 및 부품 반도체 식각공정 부품 반도체 증착 장비 및 부품 반도체용 특수가스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세정 장비 및 부품 반도체 측정/분석/검사 장비 및 부품 반도체 패키징 장비 및 부품 전력(파워)반도체(Power IC)	환경 (5개)	TMS 부품 TOC 측정기 및 부품 질소산화물 센서 공업용 순수 생산 핵심소재/장비 VOCs 저감장치
		에너지 (7개)	고출력·고효율 태양전지 셀 수소총전소 핵심부품 건물용 연료전지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수전해용 차세대 핵심소재 태양전지용 CVD 장비 연료전지용 열교환기 태양전지용 소재

기획기관명	문의처
(주)더비엔아이	02-6734-2315
(주)아이피온	02-2038-4271
(주)웍스	02-726-1109
기술보증기금	02-2155-3772
다래전략사업화센터	02-3475-7726
특허법인 다나	02-6957-9902
특허법인 이지	02-6949-6993
특허법인 프렌즈	02-563-4593
특허법인 해담	02-554-809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31

접수번호

R&D기획지원 기획기관 신청서

회 사 개 요	기 관 명		설 립 일	년 월 일	
	홈페이지		종업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0△△년 매출액	백만원	20△△년 매출액	백만원	
	사업 분야		기관구분	영리( ), 비영리( )	
	주 소				
	전 화		팩 스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e-mail	
		핸드폰			
총 책 임 자	성 명		직 위		
	전 화		e-mail		
	핸드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2021년 R&D기획지원사업의 「강소100 패키지」 기획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해당되는 경우)
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R&D기획 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